■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6.1.13.>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앞쪽)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감 리 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명)	(건축사 자격번호) (대표자)		
		현장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배치확인	사 업 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예정)	자격구분 (자격종류)	공사 종류	비고 (경력 적합 여부)
			~		건축	[ ]적합 [ ]부적합
			~		토목	[ ]적합 [ ]부적합
			~		전기	[ ]적합 [ ]부적합
			~		기계	[ ]적합 [ ]부적합
			~			

철수확인	사업명			사업기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철수일	성명	생년월일	철수사유 (교체/완료)	계획공정기간 (배치예정기간)	비고

[ ]변경 [ ]정정	변경일	성명	생년월일	분야	당초	변경(정정)내용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 성 요 령

1. "사업개요"란의 "공사종류" 및 "사업규모" 기재 예시
 - 공사종류: 판매시설, 사업규모: 연면적 ( )㎡, 층수 ( )층, 동수 ( )동
2. "변경" 통보 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건축사보 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을 기재합니다.
3. "기간"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감리구분은 "건축공사 상주감리"로 기재하고, 건축사보는 상주하는 건축사보만 기입합니다.
5. "자격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 자격 취득자는 기술계 자격 취득자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자격자는 직무분야 등급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보로 선별 기재하고, "자격종류"는 자격취득 종류(예: 건축기사 1급,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를 기재합니다.
6. "철수사유"는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하였을 때에는 "교체"로 기재하고, 퇴직, 입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 3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철수하였을 때에는 "완료"로 기재합니다.
7. "변경 및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사보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